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55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서지영 · 서천호 · 박성훈
이종배 · 이현승 · 김대식
조승환 · 김성원 · 최수진
강승규 · 구자근 · 박수민
이진숙 · 조지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32조제4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대통령령”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제6호 중 “특수교사”를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이나 특수교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보육지원) ① · ② (생략)	제22조(보육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u>대통령령</u>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 ----- ----- ----- 「 <u>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u> 」 제2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u>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대통령령</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 ③ (생략)	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	④ ----- ----- ----- ----- ----- -----.

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제22조제3항에 따른 <u>특수교</u> <u>사</u>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 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경우 7. ~ 9. (생 략) ⑤ ~ ⑧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6. -----<u>학급 및</u> <u>특수학급 설치기준이나 특수</u> <u>교사</u>----- ----- ----- 7. ~ 9.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	---